투자설명서 변경사항

효력발생일: 2011 년 1 월 28 일

▶ **투자신탁명**:
54-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주요변경사유**:
- 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추가에 따른 변경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변경내용**: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추가) **9.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 전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본문 중 전환에 관한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 모자형	종류형 모자형 **전환형((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업데이트**
4. 집합투자업자 [모투자신탁의 운용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화자산인 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위탁되는 환헤지 거래는 미달러와 외국통화와의 환헤지 거래이며, 미달러와 원화와의 환헤지 거래는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화자산의 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위탁되는 환헤지 거래는 미달러와 외국통화와의 환헤지 거래이며, 미달러와 원화와의 환헤지 거래는 집합투자업자가 **팀단위로** 직접 수행합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 인력	장성문	이정민 (문구추가) **※ 모투자신탁에서의 원-달러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헤지거래는 운용팀에서 담당합니다.**
5. 운용전문인력 나. 책임운용전문 인력 최근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2011.01.00에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장성문 에서 이정민으로 변경**
5. 운용전문인력 다. 모투자신탁의 해외 위탁 자산운용 회사 운영전문인력		(문구추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기준통화는 미달러이며 모투자신탁은 원-미달러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팀에서 담당합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자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수수료]		**전환수수료 추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자투자신탁 추가와 자투자신탁의 전환형 구조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 모자형 구조		**자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주요 투자 위험		(문구 추가)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투자원금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환율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특수위험(분산투자관련위험, 신흥시장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재간접투자위험,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유동성위험, 환매위험,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해지위험)이 있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나. 수익구조		**자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문구추가) **또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이 서술되어 있는 제3부, 4. 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중 '5. 투자위험'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추가) **재간접투자위험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위험 전환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추가) **(1) 수익증권의 전환** **(가)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수(이하"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나)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①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다) 수익자가 전환대상 투자신탁 간에 전환하는 경우 전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라) 수익자가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마)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에 따라 취득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전환처리일을 매수일로 하여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2) 수익증권의 전환방법 및 절차 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전환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3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8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환매합니다.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10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11영업일)까지 환매합니다. (나) 전환시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8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8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매수합니다. 다만, 위 (가) 항 단서에 따라 환매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환매금이 지급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당일 매수한다. (3) 전환관련 유의사항 (가) 수익자가 전환대상 투자신탁 간에 전환을 하는 경우,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 간에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나) 수익자는 판매회사가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판매하지 않거나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 이전에 전환을 원하는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해당 수익증권이 판매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환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환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다른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에 따라 취득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전환처리일을 매수일로 하여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라) 수익자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이는 판매회사 정책이나 전산 시스템 등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판매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11. 나.(4)의 환매관련 유의사항은 전환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수익자는 투자대상 투자신탁간에 전환하는 경우 환매의 경우에 준하여 당초 보유하고 있던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이익에서 관련 보수,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 당해 투자신탁		**자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내용 추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비용]		(생략) (추가) **5.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6.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에서		**자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발생하는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이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 및 모투자신탁이 이와 같은 매매·평가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생략)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 및 모투자신탁이 이와 같은 매매·평가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는 투자대상 투자신탁간에 전환하는 경우 환매의 경우에 준하여 당초 보유하고 있던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이익에서 관련 보수,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략)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생략)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법인세율 22%, 지방소득세 2.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생략)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법인세율 22%, 지방소득세 2.2%,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최고한도법인세율 20%, 지방소득세 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 현황]		**2010.11.30 기준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현황 추가**
4. 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3.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생략) 펀드의 기준통화는 USD입니다.	(생략) **피투자**펀드의 기준통화는 USD입니다.
4. 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5. 투자위험		(문구추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술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8. 운용전문인력	2009.12.31 기준	**2010.11.30 기준으로 변경**
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 연혁		**2010.11.30 기준으로 업데이트**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으로 업데이트**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2010.02.28 기준	**2010.11.30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 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	(생략)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략)	(생략)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 **(제(가)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략)
[붙임] 용어풀이		
[추가] **전환: 수익자의 요청으로 하나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대상: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상호 전환 가능한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